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83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김태년·한정애·이소영

이강일 · 정성호 · 박희승

송옥주 • 전진숙 • 윤후덕

이재정 • 홍기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 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중 "3)"을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한다.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30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	
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3) (생 략)

<신 설>

2.			 				
	가.	_	 	 	 	 	_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 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ㆍ재 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 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4) 1)부터 3)까지 외의 자 산에 투자 하는 경우 나. (생 략)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u>국가전략기술</u>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된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의 경우: 100분의 30 다) 가) 및 나) 외의 경 우: 100분의 20 5) -----4)------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 개발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u>시설</u>-----